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7.

발의자 : 김용태 · 정양석 · 이종배

김재경 · 김종석 · 문진국

김선동 · 이종명 · 정유섭

강석진 · 박찬우 · 정태옥

주호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의 지정·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,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.

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·이전하거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법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

으로써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감소 및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
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6호 중 “토지매수”를 “토지 등의 매수”로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구분소유권의 매수 청구 등에 관한 특례)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,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(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기준, 산정방법 및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)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(이하 “소음대책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손실보상 및 <u>토지매수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토지 등의 매수</u>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5조의2(구분소유권의 매수 청구 등에 관한 특례) ① 제5조</u> <u>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, 제2종</u> <u>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</u> <u>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</u> <u>건물의 구분소유자(「집합건물</u> <u>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</u> <u>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시설</u> <u>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</u> <u>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</u> <u>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관리</u></p>

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기준, 산정방법 및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.